


I. 바보의 나눔 2015년도 공모배분 공고문

2015년도 공모배분 공고문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숭고한 사랑 정신을 이어, 사회의식의 성장과 사랑의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2015년 공모배분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 7. 1.

(재) 바보의 나눔 이사장 조규만 

1. 모집분야

영역	분야	세부분야
공모 사업	해외	해외지역공동체개발사업
	국내	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소규모 시설 지원사업
		공익활동 지원사업
기획 공모	기획사업	AIDS/HIV 환우 지원을 위한 전국적 체계망 구축사업
		통합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사업
		생명 네트워크 구축사업

※ 기획공모(기획사업)은 연속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신규신청 받지 않습니다.

2. 지원대상

- (1)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익활동의 증진과 사랑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을 포함한다.) 단, 국내 사업의 경우 차상위 계층 및 사각지대 대상 지원사업이 우선순위임.
- (2) 해외 지원사업의 경우 MDG's의 8대 중점과제 해결과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한 발전),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중점을 둠.
- (3) 시행주체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인 경우 연간 총 배분액에서 25% 범위 내에서만 지원함.

3. 지원신청 및 지원원칙

- (1) 바보의 나눔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시설)장은 공고된 기일 내에 제출처에 본 법인이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 지원 신청 시 각 단체가 지원한 사업별로 스스로 정한 자부담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3)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본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함.
- (4) 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 계획서에 준해 실시되어야 함.
- (5) 지원이 확정된 기관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외부 회계 법인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참고 > 본 법인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 법인에서 감사받을 경우, 감사비용 산출내역(부가세 포함금액)

▷ 지원기관이 1개소인 경우.

지원 신청금액	감사비용	비용부담주체
1천만원 이하	220,000원	공모사업 지원금 일부를 감사비로 편성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440,000원	지원단체 자체부담으로 회계감사비를 편성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660,000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880,000원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1,100,000원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210,000원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기관 수	가산금
2개 기관 컨소시엄	감사비용의 10%부과
3개 기관 이상 컨소시엄	감사비용의 5%부과 ※ 계산방법 : <총 참여기관 수(n) - 1> × 5%

☞ 지원신청서 내의 예산서에 반드시 감사비용 예산 편성 요망.(미 편성시 서류전형 탈락)

4. 심사과정 및 일정.

- (1)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14년 9월 19일(금) 본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
- (2) 현장심사 : 2014년 9월 22일(월)~10월 10일(금)¹⁾
- (3) 면접심사 : 필요시 개별기관 통보.
- (4) 최종결과 : 2014년 12월 1일(월) 본 법인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기관 통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외대상

-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사전에 배분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4)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5)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6) 그 밖에 배분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6. 지원취소 또는 환수

- (1)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될 경우
- (2) 지원금을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4) 배분규정 제 24조에 따른 법인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 (5) 배분결정이 법인의 정관 또는 배분규정에 위반된 것임이 발견된 경우
- (6) 배분을 받은 자가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7) 그 밖에 배분위원회가 배분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 현장심사를 통보받지 못한 시설은 서류 심사에서 제외된 것이며, 현장심사를 통보받았으나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기타사항

- (1)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시점 30일 이내 제출.(별도 양식)
- (2) 배분을 받은 수행기관은 본 법인이 배분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 1)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홍보물(현수막, 전단지 등)
 - 2)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고서 및 자료.
 - 3)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입되는 모든 집기 및 비품.(소규모시설지원사업에 해당)

8.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1) 신청기간 : 2014년 7월 14일(월) ~ 2014년 8월 11일(월)까지
- (2) 접수방법 : **우편 혹은 홈페이지 접수**
 (※ 단, 제출 서류가 총 15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는 홈페이지 접수 불가, 우편 접수 요망)

		우편 접수	홈페이지 접수
제출서류	총 15페이지 이내	○	○
	총 15페이지 초과	○	×

- (3) 접수마감 : **접수마감일 우편소인분 혹은 홈페이지 마감일 24시까지 등록완료 유효**
- (4) 제출서류

		우편 접수	홈페이지 접수	
제출서류	지원신청 공문(기관양식)	1부	1부	※ 모든 서류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30MB이하)
	지원신청서, 사업요약서, 사업세부계획서	각 3부	각 1부	
	시설인가증(고유번호증)	3부	1부	

- (5) 제 출 처

가. 우 편 : 우)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408호

나. 홈페이지 : 바보의 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 배분안내 → 공모사업 → 배분신청

- (6) 양식 다운로드 : 바보의 나눔 홈페이지 ☞ 바보공지

- (7) 문 의 : babonnum@babo.or.kr (e-mail 문의만 가능!)

9. 배분사업설명회

일 자	7월 9일(수)	7월 10일(목)	7월 11일(금)	7월 14일(월)
지역	부산광역시	전주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시간	15:00~18:00	14:00~17:00	09:30~12:30	14:00~17:00
장소	국제신문사 4층 중강당	전주교구청 4층 강당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대덕홀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안내 사항	주차료 별도 (3시간 6,000원) /교대역과 연결	주차 무료	무료주차권 배부	주차 불가 (정문이용)

※ 배분사업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10. 세부 모집 요강.

(1) 공모사업.

1) 공모사업(해외분야) 국문 모집요강

① 요약

- ㉠ 지원지역 : 최빈국(LDC) 및 UNDP(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상의 중간 및 하위 그룹
- ㉡ 사업기간 : 최대 3년(주의: 각 제안은 매년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장기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총 10년까지 지원가능)
- ㉢ 지원금액 : 국가, 프로젝트 규모, 비정부기구 또는 지역 공헌의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② 우선지원 대상

- ㉠ 국가 : 최빈국(LDC) 및 UNDP(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상의 중간 및 하위 그룹
- ㉡ 바보의 나눔의 프로젝트는 국제적 연대를 기초로 하는 파트너로써 협력 역할을 할 수 있다 ; 우리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물품 지원, 일시적인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 사회변화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끄는 현지활동의 지원 프로젝트로는 : 현지 주민들의 능력과 소유권을 정립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 성별과 민감한 환경에 동기를 주어 MDG's (밀레니엄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한 발전), 향후 개발될 Post-2015 개발 아젠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출서류

- ㉠ 공문 1부.
- ㉡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지역 연락처 각 3부.
- ㉢ 현지등록증 사본 각 3부.

④ 적용방향

- ㉠ 현지 정부에 등록된 조직(참고 : 등록증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 현지 문제점의 분석, 이해관계자의 역량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 작성된 제안서는 “파트너에 대한 바보의 나눔 지침”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 사업 수행에 있어 재단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 그 지역의 전체 지원계획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 ㉥ 지역(현지) 감사를 권장합니다.
- ㉦ 제안서는 우편 제출로 8월 11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2) 공모사업(해외분야) 영문 모집요강

① Summary

- ① Target Region : LDC(Least Developed Countries) or Medium/Low group by Human Development Index(UNDP)
- ② Project period : Maximum 3 years (*note: Each proposal must be reapproved yearly.)
- ③ Matching Ratio : Depends on country, project scale, capacity of NGO or local contribution

② Priority support as following;

- ① Countries: LDC(Least Developed Countries) or Medium/Low group by Human Development Index(UNDP)
- ② Project in which BABONANUM could play a cooperative role as partner based on global solidarity; we avoid simple financial assistance or goods support, episodic aids.
- ③ Projects that support local efforts to drive positive social change; help locals built own capacity and ownership;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of most vulnerable people; motivate gender and environment sensitiveness; contribute to the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re highly recommended.

③ Documents required

- ① A Covering Letter(1 copy)
- ② Project Plan, Project Plan in Detail, Local Connection(3 copies)
- ③ Thy Copy of Local Organization Registration(3 copies)

④ Directions in application

- ① Organizations registered with the government of their own country. (*note: The copy of registry should be submitted.)
- ② Analyses of local problem, needs, stakeholders and capacity are required.
- ③ Proposal making needs to be according to “BABONANUM guideline for Partner”.
- ④ There must be no barrier to communicate with BABONANUM in implementing a project.
- ⑤ There must be an executive director who is able to control the whole supporting plans in that area.
- ⑥ Local audit is highly recommended.
- ⑦ Proposals need to be submitted by post and postmarked by August 11.

(☞ BABONANUM, 4F, Catholic Center Myeong-dong-gil 80, Jung-gu, Seoul, Korea / 100-809)

-The End-

3) 공모사업(국내분야) 모집요강

3)-1. 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 ①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최대 3년)
- ② 지원금액 : 프로젝트 규모(서비스 지역 등), 지역 공헌의 가능성 등을 검토.
- ③ 서비스 대상 : 차상위 계층 및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대상에 대하여 우선 지원.
- ④ 지원심사 기준.

- 가.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물품 지원, 일시적인 지원은 하지 않음.(비품성 장비구입예산 불가)
- 나.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함.(단, 매년 재승인²⁾되어야 함)
- 다. 제안서는 “바보의 나눔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해야 함.
- 라. 사업수행기관의 진정성,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적절성 등을 심의.
- 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5년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시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함.

3)-2. 소규모 시설 지원사업

- ① 사업기간 : 2015. 1. 1. ~ 2015.12. 31.(1년 한정)
- ② 지원금액 : 프로젝트 규모(서비스 지역 등), 지역 공헌의 가능성 등을 검토.
- ③ 지원목적 : 여러 가지의 상대적인 제한(재정, 인력 등)으로 인하여 제안서 작성의 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함.
- ④ 지원대상 : 다음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만 소규모 시설로 인정함.
 - 가. 운영되는 시설이 독립적이어야 함.
 - 나. 인사, 재정 등 운영전반이 모두 독립적이어야 함.
 - 다.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 5인 이하 시설(정규직, 계약직을 모두 포함)
 - ※ ○○복지관 부설 ○○ 공동생활가정, ○○복지관 부설 ○○ 노인주·단기 보호시설, ○○복지관 부설 ○○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복지관 부설 ○○방과후 교실 등은 소규모 시설 지원사업에서 제외.
 - ※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한 시설만 신청 가능함.
- ⑤ 지원심사 기준.

- 가.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물품 지원, 일시적인 지원도 포함.

2)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가치 그리고 효과성, 지원요청 단체의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포함한 자생력, 중간 및 최종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배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바보의 나눔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해야 함.

다. 사업수행기관의 진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심의.

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5년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시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⑥ 사전 필독사항.

가. 본 자료 II. 바보의 나눔 예산편성 및 회계지침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나. 본 단락 ④ 지원대상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 전체 지원신청 예산 중 물품구입, 시설보강이 50%미만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신청.

라. 전체 지원신청 예산 중 물품구입, 시설보강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만 신청.

3)-3. 공익활동 지원사업

① 사업기간 : 2015. 1. 1. ~ 2015.12. 31.(최대 3년까지)

② 지원금액 : 프로젝트 규모(사업대상 지역 등), 공헌의 가능성 등을 검토.

③ 지원목적 : 여러 가지의 상대적인 제한(재정, 인력 등)으로 인하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④ 지원대상 : 2013년 수입 중 정부보조금 30% 미만인 민간 단체.

⑤ 지원심사 기준.

가. 인권, 정책 및 옹호활동 관련 사업 우선 지원.

나.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물품 지원, 일시적인 지원은 하지 않음.

다.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함.(단, 매년 재승인되어야 함)

라. 제안서는 “바보의 나눔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해야 함.

마. 신청단체의 진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심의.

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5년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시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사.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담당인력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함.

(2) 기획공모사업

▶ 기획공모사업은 연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므로 기존 지원사업 외 신규 신청은 접수 받지 않음.

1) AIDS/HIV 환우 지원을 위한 전국적 체계망 구축사업

- ① 사업기간 : 2015. 1. 1. ~ 2015.12. 31.
- ② 지원금액 : 프로젝트 규모(서비스 지역 등), 지역 공헌의 가능성 등을 검토.
- ③ 지원대상 : AIDS/HIV 환우를 지원할 수 있는 전국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단체 및 법인.
- ④ 지원목적 :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사회적 배제를 받고 있는 AIDS/HIV 환우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함.
- ⑤ 서비스 대상 : AIDS/HIV 환우.
- ⑥ 서비스 지역 : 최소 3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⑦ 지원심사 기준.

가.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물품 지원, 일시적인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나.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AIDS/HIV 환우들을 위한 지원사업임으로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매년 재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함)

다. 제안서는 “바보의 나눔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해야 함.

라. 사업수행기관의 진정성,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적절성, 체계망 구축의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

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5년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시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⑧ 본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시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2) 통합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사업

- ① 사업기간 : 2015. 1. 1. ~ 2015.12. 31.(최장 5년)
- ② 지원금액 : 프로젝트 규모(서비스 지역 등), 지역 공헌의 가능성 등을 검토.
- ③ 서비스 대상 : 노인, 장애인, 아동, 빈민 등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단일 대상이어야 함.
- ④ 서비스 지역 : 최소 기초 자치단체 규모 이상, 광역자치단체 이하의 규모에서 서비스 제공.
- ⑤ 지원 목적 : 사회복지 시설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사회복지의 기본정신인 호혜와 평등의 정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간의 경쟁이 강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음. 정부와 제 단체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일반화되지는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현장과 본 법인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함.
- ⑥ 지원 대상 : 다음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법인
 - 가. 단일 서비스 대상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전부가 신청일 현재 단일 법인이 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되고 있어야 함.(각종 지역협의회 등의 경우는 단일 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나. 사회복지 시설 이외의 타 구성요소 중 행정기관을 제외한 요소(ex: 병원, 학교 등)에 대한 협력에 대한 공통요소(ex : 단일 법인, 단일 종교 등)를 갖추어야 함.
 - 다. 가, 나 항에서 언급한 모든 시설이 앞서 제시한 서비스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⑦ 지원심사 기준.
 - 가.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단, 매년 재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함)
 - 나. 적격여부, 실현가능성, 진정성, 사업의 필요성. 수행법인의 지원의지 등을 심의.
 - 다. 제안서는 “바보의 나눔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해야 함.
 - 라. 지원양식 - 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사업 지원신청서 양식을 준용.
- ⑧ 본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시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⑨ 적격대상이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3) 생명네트워크 구축사업

① 사업기간 : 2015. 1. 1. ~ 2015.12. 31.

② 지원금액 : 프로젝트 규모(서비스 지역 등), 지역 공헌의 가능성 등을 검토.

③ 지원대상 : 다음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

가. 최소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생명수호활동을 추진해온 단체 및 컨소시엄.

나. 각 단체 간의 협력에 대한 공통요소(ex : 단일 법인, 단일 종교 등)를 갖추어야 함.

다. 지원일 이전 최소한 3년 이상의 사업수행실적이 있어야 함.

④ 지원목적 : 장기기증, 헌혈, 조혈모세포, 자살예방, 미혼모 지원 등 생명수호와 관련된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확인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저변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⑤ 서비스 지역 : 최소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하여 진행해야 함.

⑥ 지원 및 심사 기준.

가.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물품 지원, 일시적인 지원은 하지 않음.

나. 생명수호와 관련된 전국적 네트워크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으로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매년 재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함)

다. 제안서는 “바보의 나눔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해야 함.

라. 사업수행기관의 진정성,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적절성, 체계망 구축의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

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5년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시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⑦ 본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시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⑧ 적격대상이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II. 바보의 나눔 예산편성 및 회계 지침

i. 예산편성 지침.

1. 각종 행사 및 경비 편성기준.

출장 여비	시내여비	실비	* KTX, 고속버스, 도선료는 일반석 기준이며, 해외 항공료는 이코노믹 클래스를 기준으로 함. * 일비, 식비는 해당 사도를 벗어나는 출장만 적용. * 일비에는 현지교통비 및 식음료비, 입장료 등 일반잡비 포함.
	교통비	실비	
	시외 일비(1인 1일)	20,000원	
	여비 식비(1인 1일)	20,000원	
	숙박비(1인 1실)	실비(상한액 40,000원)	
워크샵	1인 기준	50,000원	* 1박2일 기준임. 숙박비, 식비, 진행비 등 포함 * 사용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 필요
기 타	식비 및 다과비는 1인 기준으로 식비 10,000원 범위내, 다과비 3,000원 범위 내에서 편성		

☞ 출장여비는 전담인력에 대한 기준임.

2. 강사료 및 회의비 편성 기준.

구분	자격기준	편성기준(최대)	비고
강 사 료	☞ 주교님 이상 · 전·현직 장·차관, 총장,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단, 조정계획서 전에 이력서 제출)	· 시간당 · 기본 20만원 · 초과 12만원	기본 시 간 미만 은 기본 시 간 으 로 계산 하 고 , 초 과 하 는 시간 은 30분 단 위 로 환 산 하 여 적 용 . (올 림 을 적 용)
	· 대학 조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신부님(사제서품 10년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및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4, 5급 공무원 중 박사학위소지자 · 사회복지 기관·시설장, NGO 대표(사무총장 이상)	· 시간당 · 기본 15만원 · 초과 9만원	
	· 대학 전임강사, 겸임교수 전문대학 조교수/☞신부님(사제서품 10년 미만) · 4·5급 공무원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 ·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NGO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 시간당 · 기본 10만원 · 초과 6만원	
	· 전임 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1~2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인사	· 시간당 · 기본 7만원 · 초과 5만원	
회의비	· 3시간 이하일 경우 · 3시간 초과할 경우(1일 1회)	· 5만원 · 7만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글씨크기 13poin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기준) · 단 강의록은 10매까지만 인정.	1급 이상 매당 6천원 2급 매당 5천원 3급 매당 4천원	

☞ 예를 들어 2급 강사가 50분 강의를 하였다면 1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최대 10만원). 2급 강사가 1시간 15분 강의를 하면 1시간 30분의 기준으로 지급.(최대 13만원)

☞ **본 기준은 최대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본 기준은 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임. 따라서 지원금 기준을 벗어나는 강사료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부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강사료, 회의비, 원고료 등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슈퍼비전 비용의 경우 강사료 기준에 준하여 편성**하면 됩니다.

※ **해외 지원사업의 경우 본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외부 회계 감사 비용 편성기준.(의무사항)

(1) 공모배분 지원이 확정된 모든 시설은 지원금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금액에 따라 외부회계감사기관(공인회계사무소)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회계감사의 범위는 본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함.

(2) 지원금액이 **천만원 이하일 경우, 본 재단에 지원 신청하는 지원금 중 일부를 회계감사비로 편성**함.

(3) 지원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기관의 자체 경비로 분담**해야 하며, **지원서에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해외분야 사업의 경우, 현지 회계 감사를 권장**하며, 아래 감사비용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참고 > 본 법인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 법인에서 감사받을 경우, 감사비용 산출내역(부가세 포함금액)

▷ 지원기관이 1개소인 경우.

지원 신청금액	감사비용	비용부담주체
1천만원 이하	220,000원	공모사업 지원금 일부를 감사비로 편성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440,000원	지원단체 자체부담으로 회계감사비를 편성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660,000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880,000원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1,100,000원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210,000원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기관 수	가산금
2개 기관 컨소시엄	감사비용의 11일%부과
3개 기관 이상 컨소시엄	감사비용의 5%부과 ※ 계산방법 : <총 참여기관 수(n) - 1> × 5%

(6) 신청사업에서 **감사비용 예산 미편성시 서류전형에서 탈락**됩니다(해외분야 제외).

ii. 회계 지침.

1) 지원금은 계약기간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의 원인행위 및 실제 사업이 계약기간 말일까지 이루어졌더라도, 그 대가의 지급일자(통장인출일)가 계약일을 초과하는 것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성 부족으로 판단하여 지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지원금은 별도 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자부담이 있는 경우 지원금 통장에 자부담 금액만큼을 입금시켜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사업종료 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납처리하도록 한다.

5) 지원금의 발생 이자는 반환하지 않고, 신청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여 활용한다.

6)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자체 전산프로그램 활용 가능)

☞ 증빙자료 분류방법

- 각 기관마다 증빙자료 분류방법이나 기준이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재단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위하여 저희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통일된 증빙자료 분류방법으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출증빙자료의 세목별로 따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나. 지출증빙자료에는 지출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지출결의서, 시행기안, 결과보고 기안, 영수증, 무통장입금 증 등)이 함께 보관되어, 지출증빙자료로서 모든 사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최종결과보고 제출시 지출증빙자료를 증빙번호를 매겨서 세목별, 증빙번호 순서로 제출합니다.

라. 영수증은 복사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7) 1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단, 신용카드 구매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

8) 3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에는 구입처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9)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반드시 사업자 명의)만을 지출증빙자료로 인정한다.

10) 부득이한 사유로 간이영수증을 증취한 경우, 상호와 연락처·대표자 등을 영수증에 명시한다. 단, 사유가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시급성, 불가피성)가 있어야 하며, 증빙금액은 건당 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금액은 모두 환수 조치한다.

☞ 항상 간이영수증 증빙문제로 논란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시급성과 불가피성이라 함은 자의적인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야영 중 참가자의 사고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택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캠프나 워크샵을 진행하다가 누락된 준비물품을 현금을 이용하여 인근 가게에서 구매하는 것은 시급성과 불가피성으로 본 재단은 보지 않습니다. 이는 준비부족의 문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인쇄물 산출원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전문 강사의 경우 개별 인적사항(이력서 형식)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각종 수당 및 강사료·사례비 등에 대해서는 ①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지급조서를 받아야 하며, ② 원천징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③ 계좌이체로 지급하여야 한다.

☞ 강사의 경우 예산편성안의 기재된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3급 강사로 봅니다. 또한 그 강사에 대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지침에 제시된 3가지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절대 현금으로 인한 직접지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기관의 종사자, 또는 소속 법인 임원에게는 강의로 및 기타 비용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면 안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공제방법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자 분류방법.

- 1) 사업소득 : 주 근무지가 없으며, 강의, 컨설팅, 치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람.
- 2) 기타소득 : 소속된 주 근무지가 있으며, 강의, 컨설팅, 치료 등의 활동이 부수적인 수입인 사람.

EX) 원예치료사가 사회복지시설에 와서 활동하고 강사료를 받을 경우 → 사업소득
 대학교수가 사회복지시설에 초빙되어 강의를 할 경우 → 기타소득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공제방법

- 1) 사업소득 : 총 지급금액 × 3%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
- 2) 기타소득 : 250,000원까지는 비과세/ 2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지급금액 × 4%를 소득세로 공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공제

3.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신고방법

: 세무서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주민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납부하면 됩니다.

- 13) 지원금으로 비품성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장비를 개봉 즉시 포장과 함께 사진촬영 후 자료로 보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14) 공사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15) 본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지원금에 대한 목간의 전용을 할 수 없으며, 세목간의 전용은 가능하나 세목간의 전용금액이 총액 30만원을 초과하여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세목간의 전용의 경우에도 사후 본 재단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용 절차 및 방법

I. 지원금의 전용절차

1. 목간 전용방법.

- 1) 전용 전 사전에 본 재단 사무국에 사업변경신청.(공문,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 2) 본 재단 배분위원회 의결
- 3) 사무국 승인통보문 발송.

※ 단, 배분위원회가 지원사업 기관의 전용을 위해 별도로 개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 세목간 전용 방법.

1) 총액 30만원 이상

- ① 전용 전 사전에 본 재단 사무국에 사업변경신청.(공문,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 ② 사무국 내부 품의
- ③ 사무국 승인통보문 발송

2) 총액 30만원 미만

- ① 전용 전 사전에 기관 내부 품의(내부결재)를 통한 기관장 결재 획득.
- ② 사업시행.
- ③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시 예산변경내역(문서번호, 일자 기재)에 기재 후, 내부품의서 사본 제출.

※ 여기서 총액의 개념은 지원사업의 사업비(목) 내에 세목이 A, B, C가 있을 때, A에서 B로, A에서 C로 전용되어진 총액을 말한다.

II. 자부담의 전용절차

: 전용금액에 관계없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또는 각 부처 법령, 조례에 의거 전용하고, 추후 사업결과보고서 그 과정과 내용을 본 재단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